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0
----------	-----

2012년 7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18일, 김현기의원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기 의원)

가. 제안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성백제박물관이 고대사 중심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행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한

성백제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으므로, 한성백제박물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한성백제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대사 중심의 한성백제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개정하려는 내용은 현행 조례 제10조(위원회)에 한성백제박물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 한성백제박물관은 2012년 1월 1일 부로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어 운영되고 있고, 현행 조례에는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자문 또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 고대사 중심의 「한성백제박물관」 과 근·현대사 중심인 「서울역사박물관」 은 박물관이 지향하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새로이 개관한 한성백제박물관의 정체성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사·고대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그동안 한성백제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와 개관준비자문위원회 등이 구성·운영된바 있고,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기존 운영자문위원 중 전공분야가 맞는 최고의 전문가라면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880
----------	-----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18일
 발 의 자 : 김 현 기 의원(1명)
 찬 성 자 : 최강선, 김기덕, 전철수,곽재웅,
 김용석(서초4), 김정재, 김제리, 이진화,
 최호정, 고만규, 박태규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 2012년 1월 1일 한성백제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었으며 2012년 4월 30일 개관하였음.
- 한성백제박물관은 선사~고대사 전문박물관으로 건립되었으며 조선~근현대의 도시역사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역사박물관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을 가진 박물관임. 따라서 건립목적과 부합한 박물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운영자문위원회를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한성백제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이외 한성백제박물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성백제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고대사 관련 연구·전시·유물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p>	<p>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u>다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고대사 관련 연구·전시·유물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u></p>